

제130회예산균의회(임시회)
제 2 차 본 회 의
2006. 4. 11. (화) 11:00

심 사 보 고 서

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의안번호	제281호
의결연월일	2006.4.11

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9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4. 4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4. 10

제130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재난안전관리과장 : 장동관)

가. 제안이유

- 태풍,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 등 제반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·허가 등을 하기 전에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1조 내지 제2조)
-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정함 (안 제6조)
-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(안 제7조)

- 검토의견 및 서면검토, 회의개최를 통한 협의사항 처리내용을 정함
(안 제8조 내지 제10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영길)

- 본 조례안은 태풍·홍수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,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기 설치된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·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·운영코자 하는 것으로

- 조례안 내용중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란 명칭이 여러 차례 명기되어 있음으로 자치입법의 간결 명료화를 위하여 약칭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
즉 안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으로 한다)로 약칭 사용을 명기하고, 안 제2조제2항과 제6조제2항, 제10조의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,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 사 결 과

- 수정가결(수정안대비표 참조)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수정안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<u>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“ 검토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.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<u>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제6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②<u>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.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.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. 기타 <u>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</p> <p>제10조(협의의견 반영)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<u>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----- <u>이하“ 본부장”</u>으로 한다)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 ①----- ----- ----- ②----- -----<u>본부장</u>----- ----- --</p> <p>제6조(임기) ① ----- ② <u>본부장</u>은 ----- ----- 1.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 3. ----- 4. 기타 <삭 제> ----- -----</p> <p>제10조(협의의견 반영) ----- -----<u>본</u>----- <u>부장</u>----- -----</p>